

대 회 규 정

- 제 1조 본 대회는 제56회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라 칭한다.
- 제 2조 본 대회는 대한하키협회가 주최한다.
- 제 3조 본 대회는 매년 1회씩 개최하며, 대회일자 및 장소는 주최측에서 결정한다.
- 제 4조 본 대회 참가자격은 대한하키협회 2013년도 선수등록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단일팀이어야 한다.
- 제 5조 본 대회 경기방식은 중등부, 고등부, 대학부, 일반부로 구분하여 조별리그전 후 결선투너먼트를 한다.
(단, 참가팀 수에 따라 기간 및 경기방법은 본 협회에서 결정한다)
- 제 6조 본 대회 경기시간은 중등부 60분(30분+30분), 고등부.대학.일반부 70분(35분+35분)간으로 한다.
1. 예선리그전일 경우 채점방법은 승자 3점, 무승부 1점, 패자 0점으로 채점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(1)이긴 경기 수 (2)골득실차 (3)다득점 (4)승자승 순으로 하며 이 네가지가 같을 경우 중등부는 페널티스트로크 5회를 실시하며, 고등부 및 대학일반부는 페널티슛아웃 5회로 한다.
 2. 준결승전부터 무승부일 경우 연장전을 실시하며 연장전은 휴식 시간 없이 7분 30초씩 전, 후반으로 실시한다. 그러나 연장전 시 어느 한 팀이 골을 얻게 되면 그 순간 경기는 종료되며, 그 팀이 경기의 승자가 된다. 단, 연장전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하며 만약 무승부로 종료될 경우 중등부는 페널티스트로크 5회를 실시하며, 고등부 및 대학일반부는 페널티슛아웃 5회를 실시하여 승자를 결정한다.
- 제 7조 본 대회 경기 시작 시에 각 팀은 11명의 선수가 출전하여야 하며 경기진행 중에는 경기장에 최소 8명의 선수가 있어야 한다. 이를 위반 시에는 경기를 종료시킨다.
(이 경우에 상대팀에게는 득실 차이가 없을 경우 5:0으로 승리한 것으로 처리하고 득점차가 발생시는 종료되는 시점의 득실에서 상대팀에게 5골을 가산하여 처리한다.)
- 제 8조 본 대회 경기도중 일몰 또는 기타사유로 경기진행이 불가능할 시는 주최측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갖되 득점차가 있을시는 잔여시간의 경기만, 득점차가 없을때는 전시간의 경기를 갖는다.
(승부타 및 페널티슛아웃도 잔여경기 시간에 속한다)
- 제 9조 선수교체는 전 경기시간을 통해서 엔트리 18명 이내에서 수시로 교체할 수 있다.
- 제10조 경기도중 또는 종료 후라도 부정선수가 발각되었을 시는 성적여하를 막론하고 팀 실격으로 처리한다.
(경기 중 발각된 팀이 발생할 경우 상대 팀은 자동 승리한 것으로 간주함)
1. 경기도중 집단적으로 경기장을 이탈 및 경기에 불응하여 심판이 경고한 후 지정한 시간 이내에 출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간주, 처리하며 본 협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.
(기권 처리될 경우 성적은 2:0으로 처리한다)
 2. 대회기간 중 옐로카드를 3회 당한 선수는 당해 경기는 물론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.
 3. 완전퇴장을 당한 선수는 당해 경기는 물론 그 대회 잔여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본 협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.
 4. 본 대회 부정선수 및 이의신청은 경기중 또는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6하원칙에 따라 (단장, 부장, 감독 명의로)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.
 5. 상기사항 이외 발생하는 사항은 “경기중 시행규칙”에 의거 처리한다.
- 제11조 본 대회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불참한 팀은 대한하키협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.
- 제12조 본 대회 우승 팀에게는 우승기를 수여하며 우승기는 차기 대회시까지 보관하였다가 다음 대회에 주최측에 반환하여야 한다. 단, 보관도중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변상할 의무가 있다.
- 제13조 본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본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측에서 추가 결정한다.